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23일

나. 발 의 자: 김원섭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태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세구 · 정지원 ·
허민근 의원(16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라. 상정일자: 2024년 3월 5일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원 섭 의원

나. 제안이유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 이동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수리지원의 한계가 있어 지원금을 상향하여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제6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5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개정조례안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조정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p>(생략)</p> <p>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연간 <u>15만원</u> 이내</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u>8만원</u> 이내</p> <p>③ (생략)</p>	<p>(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 ----- <u>25만원</u> -----</p> <p>2. ----- ----- <u>15만원</u> -----</p> <p>③ (현행과 같음)</p>
---	---

- 개정안 제6조는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을 위한 개정으로, 구미시는 2023년 기준 총 208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109명,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99명)의 지원대상자에게 19,755천원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였고, 총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7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부품값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그대로여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자부담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분과 같으며,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은 필요해 보임.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상향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수리 신청 관련 일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을 실시 및 물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